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수완 의원 등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3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,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○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통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

이용하기 위한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

-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
 -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 - 안 제2조는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위원의 해임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 운영과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음.
 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 - 입법예고('20. 2. 27.~'20. 3. 3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

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인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통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